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3.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¹⁾(이하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충북도의 녹색 제품 소비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발전을 계속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본 동의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²⁾

1)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관련업무 위탁) ① 지자체장은 관내 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환경부)」 등에 의거, 지정기간 도래 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³⁾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 現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

- 지정 기관 : 청주녹색소비자연대
- 지정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단위)
- 총 사업비 : 88백만원(국비 44, 도비 44)
- 조직 구성 : 7명(센터장^{상근} 1, 사무국장^{상근} 1, 직원^{상근} 5)

4. 주요내용

- 대상사무 : 「녹색제품구매법」 제17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 위탁기간 : '2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 수탁기관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4조의2⁴⁾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제1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3)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식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5)에 따름
- 소요예산 : 72백만원(국비 36, 도비36) ※'24년 당초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무내용 :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환경부)」 제8조
 -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신청서 접수 '24년 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의 '24년 12월
 - 지정 고시(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24년 12월
 - 재위탁 운영 실시 '25년 1월 1일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5)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 이에,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모집하고,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감독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사무인 만큼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타당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충북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을 반영한 제반계획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